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또는 청약홈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홍보관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관람을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은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홈페이지(http://안성우방아이유셀에스티지.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 서류제출 예약은 홈페이지(http://안성우방아이유셀에스티지.com)를 통해 통해 가능하며,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는 당첨자에 한하여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지정된 서류접수일까지 서류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및 정부지침 등에 의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비대면 방식(빠른 등기우편을 통한 공급계약 체결)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33-383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지 문의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황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인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주택A - 46530호(2021.1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0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01파트 지하2층, 지상29층, 107세대 총 948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9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9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89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95세대, 노부모양양특별공급 28세대 포함]
- 주차대수 : 총 1,230대(지하 1,230대)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3의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등급은 1등급, 내진능력치는 VII-0.197g
- 입주시기 : 2025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인명 주택	2021000977	01	084.9677A	84A	84.9677	27.2411	112.2088	46.5327	158.7415	49.1458	265	27	27	53	8	27	142	123	10
		02	084.9471B	84B	84.9471	27.2547	112.2018	46.5214	158.7232	49.1339	681	68	68	136	20	68	360	321	26
		03	148.9346P	148P	148.9346	49.4245	198.3591	81.5642	279.9233	86.1445	2	-	-	-	-	-	2	-	-
합 계										948	95	95	189	28	95	502	446	36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약식 표기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II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입주 지정일		
084.9677A	1층	3	21,059,990	389,340,010	-	410,40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41,040,000	123,120,000	
	2층	8	21,059,990	391,470,010	-	412,530,000	41,253,000	41,253,000	41,253,000	41,253,000	41,253,000	41,253,000	41,253,000	123,759,000		
	3층	10	21,059,990	393,610,010	-	414,670,000	41,467,000	41,467,000	41,467,000	41,467,000	41,467,000	41,467,000	41,467,000	124,401,000		
	4층	10	21,059,990	395,750,010	-	416,810,000	41,681,000	41,681,000	41,681,000	41,681,000	41,681,000	41,681,000	41,681,000	125,043,000		
	5~10층	60	21,059,990	400,020,010	-	421,080,000	42,108,000	42,108,000	42,108,000	42,108,000	42,108,000	42,108,000	42,108,000	126,324,000		
	11~19층	90	21,059,990	406,440,010	-	427,500,000	42,750,000	42,750,000	42,750,000	42,750,000	42,750,000	42,750,000	42,750,000	128,250,000		
20~29층	84	21,059,990	414,990,010	-	436,050,000	43,605,000	43,605,000	43,605,000	43,605,000	43,605,000	43,605,000	43,605,000	130,815,000			
084.9471B	1층	13	21,054,890	384,545,110	-	405,60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121,680,000		
	2층	25	21,054,890	386,655,110	-	407,710,000	40,771,000	40,771,000	40,771,000	40,771,000	40,771,000	40,771,000	122,313,000			
	3층	26	21,054,890	388,765,110	-	409,820,000	40,982,000	40,982,000	40,982,000	40,982,000	40,982,000	40,982,000	122,946,000			
	4층	26	21,054,890	390,875,110	-	411,930,000	41,193,000	41,193,000	41,193,000	41,193,000	41,193,000	41,193,000	41,193,000	123,579,000		
	5~10층	156	21,054,890	395,105,110	-	416,160,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41,616,000	124,848,000		
	11~19층	234	21,054,890	401,445,110	-	422,50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42,250,000	126,750,000		
20~29층	201	21,054,890	409,895,110	-	430,950,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43,095,000	129,285,000			
148.9346P	최상층	2	36,914,690	1,057,350,282	105,735,028	1,20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360,000,000		

(단위 : 원, 부가치세 포함)

구분(주택형)	84A	84B	148P	비고
발코니 확장금액	17,000,000	17,000,000	30,000,000	

※ 추가선택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목(의상)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해당지역	일반 1순위 기타지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제출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2.01.03.(월)	2022.01.04.(화)	2022.01.05.(수)	2022.01.06.(목)	2022.01.12.(수)	2022.01.14.(금) ~ 2022.01.23.(일)	2022.01.24.(월) ~ 2022.01.28.(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초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초회 가능)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 ~ 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안성 우방아이유셀 에스티지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46-2번지)		

IV 공급금액 납부 계획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 대금	국민은행	065901-04-182366	우방산업 주식회사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 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발코니 확장	국민은행	065901-04-182353	우방산업 주식회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관리 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를 가계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V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148P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17	-	24
	중소기업 근로자	7	17	-	2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0	-	14
	장애인	경기도 7	18	-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	-	-	8
	안성시 및 경기도 우선공급(50%)	14	34	-	48
	서울, 인천, 우선공급낙차(50%)	13	34	-	47
	신혼부부 특별공급	53	136	-	18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20	-	28
	생애최초 특별공급	27	68	-	95
합계	142	360	-	502	

VI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일반 (기관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인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권외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소형, 자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경기동부보훈처장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관리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지원과, 서울시장 장애인지원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안성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던데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국가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생차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도 포함 - 태어나 입양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안성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관한 모든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재양육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또는 지역연계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근로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금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입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9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정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 본 아파트는 청약과외지역에서 공급되는 인명주택으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해당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구분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안성시) 및 전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재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차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던 재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9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정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안성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관한 모든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재양육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또는 지역연계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근로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금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입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9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정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 본 아파트는 청약과외지역에서 공급되는 인명주택으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해당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안성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관한 모든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재양육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또는 지역연계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근로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금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입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9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정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 본 아파트는 청약과외지역에서 공급되는 인명주택으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해당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V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신청 지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자녀양육, 형제제대비용) 중 입주자 자취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신청자격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성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전세대 발생 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 신청자에게 공급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